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20호

「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「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」 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·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나. 상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oym9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